

■ 개별소비세법 [별표] 담배에 대한 종류별 세율(제1조제2항제6호 관련) <개정 2025. 12. 23.>

담배에 대한 종류별 세율(제1조제2항제6호 관련)

구분	종류	세율	
피우는 담배	제1종 쫄면	20개비당 594원	
	제2종 파이프담배	1그램당 21원	
	제3종 엽쫄면	1그램당 61원	
	제4종 각면	1그램당 21원	
	제5종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370원
			연초 및 연초고형물을 사용하는 경우 1. 쫄면형: 20개비당 529원 2. 기타유형: 1그램당 51원
제6종 물담배	1그램당 422원		
씹거나 머금은 담배		1그램당 215원	
냄새 맡는 담배		1그램당 15원	

1. 쫄면: 연초에 향료 등을 첨가하여 일정한 폭으로 썬 후 쫄면제조기를 이용하여 쫄면지로 말아서 피우기 쉽게 만들어진 담배 및 이와 유사한 형태의 담배로서 흡연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
2. 파이프담배: 고급 특수 연초를 중가향(重加香) 처리하고 압착·열처리 등 특수가공을 하여 각 폭을 비교적 넓게 썰어서 파이프를 이용하여 피울 수 있도록 만든 담배 및 이와 유사한 형태의 담배
3. 엽쫄면: 흡연 맛의 주체가 되는 전충엽을 체제와 형태를 잡아 주는 중권엽으로 싸고 걸모습을 아름답게 하기 위하여 외권엽으로 만 잎말음 담배 및 이와 유사한 형태의 담배
4. 각면: 하급 연초를 경가향(輕加香)하거나 다소 고급인 연초를 가향하여 가늘

- 게 썰어, 담뱃대를 이용하거나 흡연자가 직접 쫄면지로 말아 피울 수 있도록 만든 담배 및 이와 유사한 형태의 담배
5. 전자담배: 니코틴이 포함된 용액 또는 연초 및 연초고형물을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호흡기를 통하여 체내에 흡입함으로써 흡연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만든 담배 및 이와 유사한 형태의 담배
 6. 물담배: 장치를 이용하여 담배연기를 물로 거른 후 흡입할 수 있도록 만든 담배 및 이와 유사한 형태의 담배
 7. 씹는 담배: 입에 넣고 씹음으로써 흡연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가공처리된 담배 및 이와 유사한 형태의 담배
 8. 머금은 담배: 입에 넣고 빨거나 머금으면서 흡연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특수가공하여 포장된 담배가루, 니코틴이 포함된 사탕 및 이와 유사한 형태의 담배
 9. 냄새 맡는 담배: 특수 가공된 담배 가루를 코 주위 등에 발라 냄새를 맡음으로써 흡연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만든 가루 형태의 담배 및 이와 유사한 형태의 담배